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(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), 제42조~제49조(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), 제50조~제53조(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), 제239조~제246조(화기 등의 관리), 제296조(지하작업장 등), 제301조~제324조(전기 기계·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방지), 제338조~제349조(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), 제618조~626조(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)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계절적 취약시기에 주로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취약시기인 해빙기(무너짐, 날아와 맞음, 화재 등), 장마철(무너짐, 날아와 맞음, 감전, 질식 등), 동절기(떨어짐, 무너짐, 화재, 질식 등)인 계절적 취약시기에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취약시기"라 함은 지역적으로 다소 시기에 차이는 있으나,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계절적 특성에 따라 해빙기(얼음이 녹아내리는 2월~4월 전후), 장마철(장마전선 영향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는 6월하순~7월하순 사이), 동절기(겨울철 기간으로 지역적으로 11월 또는 12월~2월 사이)를 말한다.
 - (나) 취약시기 건설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"태풍", "호우", "대설"에 대한 우리나라 기상특보 발령기준은 <표 1>과 같으나, 타워크레인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37조 (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) 2항 및 제140조(폭풍에 의한 이탈방지)에 따른다.